

의안번호	2218407
의 퇴 인	백선희의원
회 답 일	2026. 6. 18.
추 계 번호	26B2241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 추계) 개정안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‘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,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·해소 협의체의 업무 지원’을 추가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0억 5,300만원(연평균 12억 1,100만원)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업무 범위 확대 (안 제52조제2항)	1,133	1,171	1,209	1,249	1,290	6,053	1,211

주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채용 인원 및 인건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1조의2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협의체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52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)	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제2항) <신 설> 3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 <신 설> 4. 제51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 지원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1조의2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협의체) 신 설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민간 전문가 참석수당, 협의체 운영비용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수, 회의 개최횟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2	안 제52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 존 대응센터)	○	•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¹⁾

□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(2026. 3.)

	(단위: %)					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명목임금상승률	3.3	3.3	3.3	3.3	3.3	3.3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(스마트쉼센터)는 ‘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,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·홍보 등’을 수행²⁾하는 기관으로서, 17개 시·도에 총 18개³⁾ 센터를 설치·운영 중에 있음
 -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(스마트쉼센터)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, 국가가 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(출연)하고 있음

[표 2]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관련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예산(2026년)
건전정보 문화조성 (스마트쉼센터 운영)	17개 시·도에 총 18개의 스마트쉼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 지원 -(예방교육) 전국 어린이집, 유치원, 각급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('24년, 약 66만명) 및 특별교육 실시 -(전문상담) 전국 스마트쉼센터(18개) 기반 내방, 대표전화, 온라인,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상담(1,547명) 등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(약 5.6만건)	3,505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개정안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‘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,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·해소 협의체의 업무 지원’을 추가하려는 것으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담당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

- 2) 제52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(이하 “대응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
 2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·홍보
 3.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3)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·도에는 각 1개의 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, 경기도의 경우 2개(남부·북부)의 센터가 위치함

[표 3] 개정안 업무 수행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필요 인력(안)

개정안 업무	필요 인력
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	18명 *18개 센터별 각 1명의 전문 상담사 배치
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·해소 협의체의 업무 지원	1명 *협의체 지원 업무를 수행할 행정 인력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안의 업무를 수행할 인원(상담사 18명, 행정 인력 1명)에 대한 인건비를 추계함

- (수행 인원의 인건비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담사는 현행 스마트쉼센터 상담사의 평균 급여를, 행정인력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직원(책임급)의 평균 급여를 적용함
 - 스마트쉼센터 전문 상담사 급여(2026년 기준): 56백만원(기관부담금 포함)
 -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직원(책임급) 급여(2026년 기준): 89백만원(기관부담금 포함)
- (추계 결과) 개정안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‘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,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·해소 협의체의 업무 지원’을 추가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0억 5,300만원(연평균 12억 1,100만원)으로 추계됨
 -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: 2027~2031년

구 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상담사	인원(A, 명)	18	18	18	18	18	—	—
	인건비(B, 백만원)	58	60	62	64	66	—	—
	소계(C=A×B, 백만원)	1,041	1,076	1,111	1,148	1,186	—	—
행정 인력	인원(D, 명)	1	1	1	1	1	—	—
	인건비(E, 백만원)	92	95	98	101	105	—	—
	소계(F=D×E, 백만원)	92	95	98	101	105	—	—
합 계(G=C+F, 백만원)		1,133	1,171	1,209	1,249	1,290	6,053	1,211

주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채용 인원 및 인건비 등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채용인원 및 인건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